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5. . (제회)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5.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안전성조사 절차,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등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
(안 제1조의2)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유통 중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를 매출액, 소비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준을 정함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자료 규정(안 제5조의7)

법에서 위임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수립·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자료를 명시함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의5, 안 제5조의

6, 안 제5조의8)

법에서 위임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절차,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조사결과 조치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함

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등의 결과보고 관련사항 규정(안 제8조의5)

법에서 위임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의 정보 등을 삭제 등을 조치한 결과를 보고토록 명시함

마. 직접구매 해외제품 삭제 등의 권고 및 공표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법에서 위임한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등 권고 절차, 공표방법 등에 대해 명시함

바. 권고 등의 해제 신청,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항, 안 제17조의2제1항, 제25조)

불복하려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권고 절차와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방법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위임하는 사항 등을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의2,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에서 제5조의5부터 제5조의8까지, 제8조의2에서 제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①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5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이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때 필요하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상표·모델명(상표·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품 사진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제조연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제조 국가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명
6.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페이지 주소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6(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5조의7(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 유통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 등에 관한 자료
3.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4.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검사·분석 등에 관한 자료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를 따른다.

②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 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상표·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품사진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삭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3(공표의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방송 또는 법 제 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상표·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제8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삭제등의 결과보고) ① 법 제10조의 2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삭제등의 내용과 실적
3. 삭제등을 이행하지 못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항에서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의 권고에 대해 불복하려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수거등”을 “수거등의 권고·명령 또는 삭제등의 권고”으로 한다. 그리고 제3항에서 “수거등의 권고·명령”을 “수거등의 권고·명령 또는 삭제등의 권고”로 하고,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제1항제1호에서 “제품”을 “제품 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한다. 제2호에서 “제품”을 “제품 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한다. 제3호에서 “안전성조사”를 “안전성조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로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제2의5에서 제2의6까지, 제3의3에서 제3의4까지를 신설한다.

2의5.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조사, 조사내용 · 결과의 보관

2의6.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3의3.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3의4.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 보고의 접수

부 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①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u><신 설></u>	제5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이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때 필요하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

<신 설>

제품의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상표·모델명(상표·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품 사진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제조연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제조 국가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명

6.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6(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

<신 설>

<신 설>

관할 수 있다.

제5조의7(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법 제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 유통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 등에 관한 자료
3.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4.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검사·분석 등에 관한 자료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를 따른다.
②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

<신 설>

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상표·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품사진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삭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의3(공표의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

<신 설>

<신 설>

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상표·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 중 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의 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제8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삭제등의 결과보고)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삭제등의 내용과 실적
3. 삭제등을 이행하지 못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조치계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

획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

----- 사업자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의 권고에 대해 불복하려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명령 또는 삭제등 권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거등의 권고·명령 또는 삭제등의 권고 -----

-----.

-----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2항 -----

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명칭·모델명·제품사진
2. 해당 제품의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의 내용과 결과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① -----

-----.

1. -- 제품 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
2. -- 제품 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사업자 또는 해외통신 판매중개자-----
3. ----- 안전성조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의 내용과 결과

② (현행과 같음)

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
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
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
리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결과
의 보관 및 열람
-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
의 통보
- 2의3.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
· 결과의 보관 및 열람
- 2의4.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
청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신 설>

<신 설>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 3의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

제25조(권한의 위임) -----

-----.

1. ~ 2의4. (현행과 같음)

2의5.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조사내용·결과의
보관

2의6.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
청

3. · 3의2. (현행과 같음)

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신 설>

<신 설>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 4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
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
부 또는 일부 해제
- 6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
품의 결함 보고의 접수
- 6의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
품 수거등의 실적 등 보고의 접
수
- 6의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
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보고 및 외국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사실 보고
의 접수
- 6의5.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의 접수
- 6의6.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
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 및 사
고조사 결과 보고의 접수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
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

3의3.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3의4.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 보고의 접수

4. ~ 13. (현행과 같음)

고조사센터의 지정

8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8의3.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접수

8의4. 법 제15조의3제2항 및 제4
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
전정보망의 구축·운영

10. 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
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
업 추진

13.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징수

<신 설>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4서식]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보 삭제 등 결과보고서

사업자	법인명 (대표자)			
	보고자	(직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권고 날짜	
권고 이행 결과	(별첨가능)

품목	제품 사진	제품 정보	시험 기준	세부내용	유통플 랫폼	UR	판매중지여 부

판매중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 대책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보 등의 삭제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870 - 5415